

제5조(국가대표 지도자의 자격) ① 국가대표 지도자는 체육회 경기인등록규정에 따라 지도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선발 당시 지도자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은 한시적으로 회원종목단체의 소속 지도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06.>

② 국가대표 지도자 중 총 감독과 감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해당종목 경기 지도경력 5년 이상과 해당 종목의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2. 해당종목 경기 지도경력이 4년 이상 5년 미만이지만 체육관련 학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해당종목의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3. 해당종목 경기 지도경력이 2년 이상 5년 미만이지만 2년 이상 국가대표 선수 경력과 해당종목의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4. 해당종목 경기 지도경력이 1년 이상 5년 미만이지만 올림픽대회와 아시아 경기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하고 해당종목의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5. 외국인은 2년 이상의 해당 국가의 국가대표 선수 경력 또는 5년 이상의 해당종목 지도경력 있는 사람

③ 국가대표 지도자 중 코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해당종목 경기 지도경력 2년 이상과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2. 해당종목 경기 지도경력이 1년 이상 2년 미만이지만 체육관련 학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해당종목의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3. 해당종목 경기 지도경력이 1년 미만이지만 올림픽대회 또는 아시안경기대

회에서 메달을 획득하고 해당종목의 2급 이상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

4. 해당종목 경기 지도경력이 1년 미만이지만 2년 이상 체육회 강화훈련 경력, 올림픽대회 또는 아시아경기대회 출전 경력과 해당종목의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5. 외국인은 2년 이상 해당 국가의 국가대표 선수 경력 또는 2년 이상의 해당종목 지도경력 있는 사람

④ 해당종목이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서 정한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 종목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

1. 총감독 및 감독은 해당종목 경기 지도경력이 2년 이상이고 해당종목의 생활스포츠지도사 1급 자격이 있는 사람

2. 코치는 해당종목 경기 지도경력이 1년 이상 2년 미만이지만 해당종목의 생활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자격이 있는 사람

3. 해당종목이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서 정한 전문스포츠지도사 및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종목의 법인 단체가 발행한 자격증을 인정할 수 있으나 지도경력은 감독은 5년 이상 코치는 2년 이상으로 한다.

4. 외국인은 해당 국가의 국가대표 선수 또는 해당종목 지도경력이 제2항제5호와 제3항제5호로 한다.

⑤ 종목별로 국가대표 지도자 정원의 30% 이상을 여성 지도자로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여성선수가 참가할 수 없는 종목 또는 최초 선발 공고 후 여성 지원자나 적격자가 없을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1. 10. 06.>